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개정('99. 2. 8법률 제5865호)에 따른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확정된 규제정비계획을 반영함과 동시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 의료법(보건복지부)에 의하여 관리하던 감염성 폐기물이 2000년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환경부)에 의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 정의 ⇒ 신설
-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설치 및 관리) ⇒ 삭제
- 제17조(폐기물투기금지) ⇒ 삭제

□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조, 제15조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정폐기물”이라함은 법제2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감염성폐기물”이라함은 법제2조제4의2호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의2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 제4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제3항중 “배출 하여야 한다”를 “배출 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생활계폐기물인 것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생활폐기물인 것은 다음각호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중 “제1항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사업장생활폐기물로,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3항중 “제3항”을 “제1항 제3호”로 한다.

1. 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1일 평균배출량 100킬로그램 미만의 생활폐기물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량을 말한다)이하 배출하는 사업장

제13조 제2항중 “60”을 “40”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내지 제21조”를 “제16조내지 제19조”로 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중 일시적다량폐기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수 수 료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일시적다량 폐기물	톤 미만 톤초과 100 kg 마다 5톤 미만	15,000원 1,500원 추가 75,000원
냉 장 고	500 ℓ 이상 300 ℓ 이상 300 ℓ 미만	8,000원 6,000원 4,000원
텔 레 비 전	25 인치 이상 25 인치 미만	5,000원 3,000원
세 탁 기	모 든 규 격	4,000원
에 어 콘	264 m ² 형이상 66 m ² 형이상 66 m ² 형미만	8,000원 5,000원 3,000원
가스오븐렌지	높이 1 M 이상 높이 1 M 미만	4,000원 2,000원
탈 수 기	모 든 규 격	2,000원
공 기 청 정 기	높이 1 M 이상 높이 1 M 미만	4,000원 2,000원
장 농	120cm 장 1쪽 90cm 장 1쪽	15,000원 10,000원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쇼 파	대형 6 인용	8,000원
	소형 4 인용	5,000원
책 상	양수, 대형	5,000원
	편수, 소형	4,000원
식 탁	6인용 이상	5,000원
	6인용 미만	4,000원
피 아 노	어프라이터	10,000원
	그 랜 드	15,000원
보 일 러 통	대 형	8,000원
	중 형	5,000원
	소 형	3,000원
캐 비 넷	모 든 규 격	4,000원
침 대	2 인용	8,000원
	1 인용	5,000원
기타가전제품 및 사무용품	대 형	5,000원
	중 형	4,000원
	소 형	2,000원

(주) 상기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현행과 같음) 5.“지정폐기물”이라함은 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감염성폐기물”이라함은 법 제2조 제4의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③(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원가 계산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 할 수 있다	제4조(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③(현행과 같음) ④----- -----재정경제부----- -----
제5조(폐기물배출방법등)① <u>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u> 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배출방법등)① <u>생활폐기물</u> ----- ----- ----- -----
③대형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 면,동사무소에 사전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수량, 크기등에 관하여 신고를 필한후 [별표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후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 -----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④~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조치)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생산 공정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제외한 식당, 기숙사, 사무실등에서 배출되는 성상이 <u>생활계폐기물인 것에 한하여</u>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조치)①----- ----- ----- ----- ----- ----- <u>생활폐기물인 것은 다음 각호에 한하여</u> 처리할 수 있다 1. <u>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은 1일 평균배출량 100킬로그램 미만의 생활폐기물</u> 2. <u>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u> 3. <u>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하 배출하는 사업장</u>
<신설>	
② <u>제1항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일반용쓰레기 봉투에 담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사업장 생활폐기물</u> ----- -----
③ <u>제2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지 않고 자가 수집,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 운반용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u>	<삭제>
④ <u>제3항에 의거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 처리비는 [별표1]의 일시적다량 배출물 수수료를 적용한다</u>	③ <u>제1항 제3호</u> ----- ----- -----

현행	개정안
제13조(수수료 감면)①(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 공급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수수료 감면)①(현행과 같음) ②----- ----- 40-----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⑦(생략)	<삭제>
제16조(생략)	제15조(현행16조와 같음)
제17조(폐기물투기금지)①~③(생략)	<삭제>
제18조~제21조(생략)	제16조~제19조(현행제18조내지 제21조와같음)

(현 행)

【별표1】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수 수 료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일시적다량 폐기물	톤 당	15,000원
냉 장 고	500 ℓ 이상	8,000원
	300 ℓ 이상	6,000원
	300 ℓ 미만	4,000원
텔 레 비 전	25 인치 이상	5,000원
	25 인치 미만	3,000원
세 탁 기	모 든 규 격	4,000원
에 어 콘	264 m ² 형이상	8,000원
	66 m ² 형이상	5,000원
	66 m ² 형미만	3,000원
가스오븐렌지	높이 1 M 이상	4,000원
	높이 1 M 미만	2,000원
탈 수 기	모 든 규 격	2,000원
공 기 청 정 기	높이 1 M 이상	4,000원
	높이 1 M 미만	2,000원
장 농	120cm 장 1쪽	15,000원
	90cm 장 1쪽	10,000원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쇼 파	대형 6 인용	8,000원
	소형 4 인용	5,000원
책 상	양수, 대형	5,000원
	편수, 소형	4,000원
식 탁	6인용 이상	5,000원
	6인용 미만	4,000원
피 아 노	어프라이터	10,000원
	그 랜 드	15,000원
보 일 러 통	대 형	8,000원
	중 형	5,000원
	소 형	3,000원
캐 비 넷	모 든 규 격	4,000원
침 대	2 인용	8,000원
	1 인용	5,000원
기타가전제품 및 사무용품	대 형	5,000원
	중 형	4,000원
	소 형	2,000원

(주) 상기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제 정 안)

【별표1】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수 수 료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일시적다량 폐기물	톤 미만 톤초과 100 kg 마다 5톤 미만	15,000원 1,500원 추가 75,000원
냉 장 고	500 ℓ 이상 300 ℓ 이상 300 ℓ 미만	8,000원 6,000원 4,000원
텔 레 비 전	25 인치 이상 25 인치 미만	5,000원 3,000원
세 탁 기	모 든 규 격	4,000원
에 어 콘	264 m ² 형이상 66 m ² 형이상 66 m ² 형미만	8,000원 5,000원 3,000원
가스오븐렌지	높이 1 M 이상 높이 1 M 미만	4,000원 2,000원
탈 수 기	모 든 규 격	2,000원
공 기 청 정 기	높이 1 M 이상 높이 1 M 미만	4,000원 2,000원
장 농	120cm 장 1쪽 90cm 장 1쪽	15,000원 10,000원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쇼 파	대형 6 인용	8,000원
	소형 4 인용	5,000원
책 상	양수, 대형	5,000원
	편수, 소형	4,000원
식 탁	6인용 이상	5,000원
	6인용 미만	4,000원
피 아 노	어프라이터	10,000원
	그 랜 드	15,000원
보 일 러 통	대 형	8,000원
	중 형	5,000원
	소 형	3,000원
캐 비 넷	모 든 규 격	4,000원
침 대	2 인용	8,000원
	1 인용	5,000원
기타가전제품 및 사무용품	대 형	5,000원
	중 형	4,000원
	소 형	2,000원

(주) 상기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